

독일판례 1

표지기사는 질문에 대해 마치 대답을 한 것과 같은 인상을 불러 일으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를 입은 자로 볼 수 없다

뮌헨 고등법원 1990. 7. 25 판결
-21U 3985/90 사건-

적용법조

Bayern 주 언론법 제 10 조

판결요지

1. Bayern 주의 언론법이 적용되는 범위에 있어서, 반박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기간)은, 결국 그 청구가 시사성이 존재하고 있는 시점까지 행해졌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2. 위 시간적 정당성의 판단은 결국 개개의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그리하여 결국 위 시간적 정당성은, 피해자가 누구인가, 그 보도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그 보도가 피해자 및 일반 대중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어떠한 것인가 및 그 정기간행물의 종류와 그 발간형태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다.

사실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가처분의 방법에 의하여 반박문의 게재를 청구하고 있다
피신청인 1)이 발행인으로 되어 있고, 피신청인 2)가 책임편집인으로 되어 있는 「B」 잡지의
1990. 3. 15 자 제 12 호 표지에는 『독일 연인들의 추억, 나는 어떻게 그의 부인이 되었나?
20 명은 성공, 15 명은 실패』 라는 제목과 함께, 이 사건 신청인이 영화배우인 Klaus-Jürgen
Wussow 와 함께 서 있고, 그 외에 2 쌍의 다른 부부 및 한명의 부인과 함께 서 있는 커다란

사진이 게재되어 있었다. 위 표지의 사진 중에서 작은 모습으로 인쇄되어 있는 2 쌍의 부부사진에 대한 설명으로는 「결혼성공」이라고 써어 있고, 한명의 다른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는 「실패」라고 써어져 있었으며, 이 사건 신청인의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는 「아직은 미정;Yvonne Viehofer 이냐 Wussow 이냐. 이혼이 있을 듯. 그는 그의 연인과 결혼할 것인가? 」라고 써어져 있었다.

신청인은 그녀가 아직 외국에 머무르고 있던 때인 1990. 3. 15.에야 위 잡지의 표지에 그의 사진이 게재된 것을 알게 되었다. 1990. 3.22.에 신청인은 그의 변호사인 대리인과 함께 그가 청구하려고 하는 반박문의 내용에 관하여 전화상으로 서로 협의하였다. 그녀가 1990.4. 5.에 독일로 돌아온 이후에 1990.4.18.자의 서신으로, 피청구인에게 반박문을 전달하였으며, 그와 함께 위 반박문의 게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0.4.20.자의 서신으로 위 반박문의 게재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신청인은 이미 1990. 3. 29.에 가처분의 방법으로, 신청인이 「B」잡지의 편집인에 대하여 신청인이 어떻게 하여 Klaus-Jurgen Wussow 의 부인이 되었는지의 질문에 관하여 답변을 한 것처럼 보이는 인상을 주는 것을 피신청인이 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고,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일정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1990.4. 11.자의 구두변론을 거쳐, 1990.4. 25.에 신청인 승소의 종국판결을 하였다(사건번호는 906433/90 Munchen 1 지방법원).

신청인은 1 심법원에서 그녀는 지체없이 반박문게재의 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신청인은, 위 표지사진에서 나타나는 인상과 같이, 그녀는 결코 아무 때도-그리고 역시 「B」잡지에 대하여서도 결코-그녀가 어떻게 해서 Klaus-Jurgen Wussow 의 부인이 되었는지의 질문에 관하여 답변한 적이 없었으므로 위 반박문의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반박문을, 「B」잡지의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의 잡지에 게재하여 주되, 특히 위 잡지의 표지에 활자의 크기도 크게 하면서 또한 적절한 인쇄기술을 사용하여 반박문이라는 것을 표제로서 강조하여 게재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반 박 문-

「B」잡지의 1990. 3. 15.자 제 12 호 표지에, Klaus-Jurgen Wussow 씨와 나를 찍은 사진이 게재되어 있고, 동시에 「독일 연인들의 추억-나는 어떻게 하여 그의 부인이 되었는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위 기재내용에 의하면, 마치 내가 어떻게 하여 Klaus-Jurgen Wussow 씨의 부인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FBJ 잡지사에게 어떠한 대답을 한 것과 같은 인식을 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점에 관하여 나는 「B」잡지사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 대하여도 이 점에 관하여 답변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지방법원은 위 가처분의 신청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써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즉 이 사건 반박문게재의 청구는 지체없이 행해진 것이 아니므로, 따라서 이 반박문게재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위 판결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인은 항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이유

신청인의 항소는 독일민사소송법 제 57 조, 511 조, 516 조, 518 조, 519 조의 규정에 의하면 적법하기는 하지만, 그 이유는 없다.

1) 이 사건에 있어서 반박문의 게재를 청구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 무엇보다도 위 반박문의 게재청구는 적법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2) 반박문게재청구의 시간적 적법성에 관한 문제의 출발점은 1949. 10. 3.에 제정되고 1983. 1. 1.에 개정된 Bayern 주 언론법 제 10 조 제 2 항의 규정이다. 위 규정에 의하면, 다른 모든 주의 언론법의 규정과는 반대로 Bayern 주에서는 반박문게재청구의 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특정한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 단지 반박문의 게재는 지체없이 청구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따름이다.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반박문 게재청구는 시간적으로 아무런 제한없이 아무 때에나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박문의 게재는 그 시사성이 인정될 수 있는 시기 이내에 청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 시사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피해자가 그의 반박문의 게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결국 문제로 되는 것은, 그 사건이 아직은 시사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건이 아직 일반독자들의 인식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느냐의 여부의 문제인 것이다. 이에 반하여 만약 그 사건이, 기준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마치 대답을 한 것과 같은 인상을 불러일으켰다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위 기사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근거로 되는 것은, 편견 없고, 주의 깊은 평균적인 독자들이 이해하는 바의 위 잡지사의 객관적인 의미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목 및 사진설명문의 문안 및 그 외형상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전체적인 관련하여 대상으로 되는 독자층이 이해하고 있는 묘사되고 있는 사진과 관련하여 그 사진의 내용이 문제로 되는 것이다.

신청인이 어떻게 하여 위 영화배우의 부인이 되었는가 라는 문제에 대하여 신청인이 대답을 하였다고 하는 내용은 위 잡지의 표지기사에 의하여 주장되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편견 없는 평균적인 독자의 이해에 의하더라도 위 보도된 기사의 전체적인 관계로부터도 위와 같은 내용을 간취할 수는 있는 상황이었다. 오히려 『독일 연인들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부터 보면, 위 제목은 35 명의 부인들에 대한 총체적인 제목으로서, 이 중 20 명은 성공하였고, 15 명은 실패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즉 위 경우에 있어서 보면 3 개의 서로 다른 그룹이 나타나 있다. 2 명의 부인(이들은 그들의 남편과 함께 부부로서 묘사되어 있다)은 성공을 거두었고, 한명은 실패하였고, 신청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의 애인이 신청인과 결혼할 것인지의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이었다. 신청인의 위 사진이 그 크기와 모양에 있어서 다른 사진들과 눈에 띄게 두드러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 만으로서는 신청인이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는 인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위 사진 및 그 사진설명문의 문구는 위 총체적인 제목 및 그리고

2 개의 다른 그룹들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 「추억들」 이 라는 단어로부터도, 위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위 35 명의 부인들이 그들 자신의 일생 또는 일생의 중요부분들을 문자 그대로 설명해 주었고, 「B」 잡지는 위 점에 관하여 어떠한 지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없는 것이고 또한 평균적인 독자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리고 역시 위 35 명의 부인들이 「B」 잡지에 대하여 위 점에 관한 대답을 하였고, 따라서 신청인도 역시 위 「B」 잡지에 대하여 대답을 하였다는 추론도 위 「추억들」 이라는 단어로부터 이끌어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타 신청인의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다른 사정들도 발견되지 아니한다.